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특약

제 1조 [목적]

제 2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 3조 [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

제 4조 [보험료 할인의 적용]

제 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특약

제 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별도로 정하는 대상계약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할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이 특약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대상 상품에 가입한 계약 중, 유효한 계약(이하 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 3조 [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

① 계약자(미성년자인 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보험료 할인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출산한 경우(다만,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하고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중인 경우

용어해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료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해당기간 내에 보험료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④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적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대상계약 당 1회에 한하여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는 회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각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출산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나. 육아휴직: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상계약의 주계약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갱신형 주계약의 갱신 일까지의 잔여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이미 대상계약에 대해 이 특약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경우
 3. 제1항의 보험료 할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다만, 변경 전 계약자가 변경 후 계약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설명

[예시안내]

< 계약자가 두 명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상계약을 각각 가입한 경우 >
 ·2026년 7월 1일 첫째자녀 출생, 2029년 12월 1일 둘째자녀 출생 가정

할인 대상	할인 신청 요건			
	첫째 출산	둘째 출산	첫째 육아휴직	둘째 육아휴직
첫째 자녀 대상계약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신청 가능
둘째 자녀 대상계약	미가입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신청 가능

※ 다만, 대상계약 당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자녀의 대상계약을 가입한 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해당하여 **할인신청 불가**

·첫째 및 둘째 자녀의 대상계약을 각각 가입한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첫째자녀 계약은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미해당하여 **할인신청 가능**,
 둘째자녀 계약은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해당하여 **할인 신청 불가**

·첫째 및 둘째 자녀의 대상계약을 각각 가입한 후, 계약자(또는 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 계약 모두 **할인 신청 가능**

제 4조 [보험료 할인의 적용]

계약자가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승인한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에 해당하는 12개월분의 영업보험료를 할인합니다. 할인 금액은 대상계약의 영업보험료에 1.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